

[2024년 보건복지부 정책 돋보기]

긴급복지 지원대상 늘고 지원금액 오른다

-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인가구 월 8만 9,800원 인상된 71만 3,100원 지급-
- 동절기(1월~3월, 10월~12월) 연료비 월 15만 원 지원 -

올해부터 1인 가구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월 62만 3,300원에서 89,800원 인상된 월 71만 3,100원으로 오른다.

보건복지부(장관 조규홍)는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하고자 2024년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대상자 기준은 완화하고 생계지원금은 인상하는 등 긴급복지 예산 3,585억 원을 투입한다.

긴급복지지원*은 실직으로 소득상실,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, 주거, 의료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다.

* (지원요청) 관할 시군구(읍면동),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
* (신고)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요청 기관으로 신고

긴급복지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과 금융재산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다.

1인가구 기준, 소득기준은 2023년 월 1,558,419원 이하에서 2024년 1,671,334원 이하로, 금융재산기준은 2023년 8,077,000원(실금융재산액) 이하에서 2024년 8,228,000원 이하로 인상되어 더 많은 위기가구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.

< 2024년 긴급복지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 >

구분	가구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
소득 (원/월)	2023년	1,558,419	2,592,116	3,326,112	4,050,723	4,748,019	5,420,986
	2024년	1,671,334	2,761,957	3,535,992	4,297,434	5,021,801	5,713,777
금융재산 (원)	2023년*	8,077,000	9,456,000	10,343,000	11,400,000	12,330,000	13,227,000
	2024년	8,228,000	9,682,000	10,714,000	11,729,000	12,695,000	13,618,000

* ('23년 금융재산) 생활준비금('23년 기준 중위소득)과 600만원('23년 고시)을 합산한 실금융재산액

2024년에 지급되는 생계지원금은 1인가구 기준 2023년 월 623,300원에서 89,800원 늘어난 월 713,100원으로 인상되었다.

<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>

(단위:원/월)

가구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
2023년	623,300	1,036,800	1,330,400	1,620,200	1,899,200	2,168,300
2024년	713,100	1,178,400	1,508,600	1,833,500	2,142,600	2,437,80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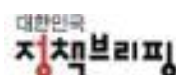
연료비는 생계, 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 동절기(1월~3월, 10월~12월) 동안 월 15만 원이 지원된다.

이와 같은 긴급복지지원 확대를 위해 예산은 2023년 3,155억 원에서 430억 원 증액(13.6%)되어 3,585억 원으로 늘어났다.

정충현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“이번 조치로 갑작스러운 실직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분들이 더욱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.”라고 밝혔다.

<붙임> 2024년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요

담당부서	복지정책관 기초생활보장과	책임자	과 장	정준섭 (044-202-3051)
		담당자	사무관	박혜선 (044-202-3058)



- (사업 목적)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함
- (지원 대상)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 기준 및 재산(재산의 합계액 및 금융재산)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
 - (위기사유)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 상실,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·부상, 휴·폐업으로 실질적 영업곤란, 화재·자연재해로 인한 거주지에서 생활 곤란 등
 - (소득) 기준 중위소득 75%(1인가구 167만 원, 4인가구 429만 원) 이하 (재산의 합계액*) 대도시 241백만 원, 중소도시 152백만 원, 농어촌 130백만 원 이하
 - * 주거용 재산공제 적용 시 대도시 310백만 원 중소도시 194백만 원 농어촌 165백만 원 이하 (금융재산) 1인 가구 822만원, 4인가구 1,172만원 이하
- (지원 내용) 대도시 4인 기준 생계지원 183만 원, 주거지원 66만 원 이내,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149만 원 이내, 의료지원 300만 원 이내 의료서비스 지원, 연료비(1~3월, 10~12월) 월 15만 원 등
- (지원 요청) 관할 시군구(읍면동),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 - (신고)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요청 기관으로 신고